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70
----------	-----

2023. 12. 12.(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봉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1월 29일

-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봉순 의원)

가. 제안사유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 민간 단체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안 제2조)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나 양육 대책은 혼인 가정에 집중되어 있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혼모는 20,132명, 미혼부는 5,889명으로 미혼모 인구가 미혼부 인구 대비 약 3.4배 더 많으며, 중복은 미혼모 599명, 미혼부 171명으로 미혼모 인구가 미혼부 인구 대비 약 3.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들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일자리 및 경제활동, 주거 등에 대한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⁴⁾.

4)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이에 미혼모·미혼부 가정을 단순히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할 경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으므로 미혼모·비혼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도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충청북도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조례에 해당하므로 목적에서 인용법령을 삭제하고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타당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 본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는 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함.

○ 안 제4조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대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로 충북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한 지원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8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업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지원사업에 출산 전후 상담 및 긴급지원,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추가하여 한부모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지원하고 주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 보여지며 본 조례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함.
- 안 제12조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최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 특히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있음.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임신·출산·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
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
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3.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자립지원
4. 보건·의료서비스
5. 출산 전후 상담 및 긴급지원
6.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
7. 미혼모·부 주거지원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자립지원
9.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한부모가족지원 담당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 나. 충청북도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한부모가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다.
 -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출산 전·후 미혼모 등에게 상담 및 정보제공, 긴급생활비 등 긴급지원
- 출산 전·후 미혼모·부 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출산 전·후 미혼모 등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긴급 생활비 등 지원
- 출산 전·후 미혼모·부 등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주거지원비

3. 관련조문

- 안 제7조제1항제5호(출산 전후 상담 및 긴급지원)
- 안 제7조제1항제7호(미혼모·부 주거지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2028년 (5년간)

나. 추계 결과 : 200,000천원

- 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 45,000천원
 - 45,000천원 × 1인 = 45,000천원
- 긴급지원 사업비 : 55,000천원
 - 임신확인서 발급 검사비용 : 100천원 × 10인 × 1회 = 1,000천원
 - 긴급생활비 지원 : 300천원 × 20인 × 최대 6개월 ≒ 34,000천원
 - 산후조리비 지원 : 2,000천원 × 10명 × 1회 = 20,000천원
- 주거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 45,000천원
 - 45,000천원 × 1인 = 45,000천원

○ 주거지원 사업비 : 55,000천원

- 신규주택 임대보증금 : 9,000천원 × 4호 = 36,000천원
- 주택관리 및 입주자 지원 : 3,000천원 × 4호 = 12,000천원
- 심리검사 등 위기지원 : 7,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긴급지원 사업비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275,000
주거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주거지원 사업비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275,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방세						
	세외수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